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236 호

『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21일

중소기업청장

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투자활성화 대책('13.5.1)에서 창투사 투자의무 인정범위 확대를 결정
 - 창투사가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투자펀드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실적으로 인정
- 상위 규정 개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필요

2. 관련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

3. 주요내용

① 잘못된 규정 인용 수정(안 제3조제1항제3호)

* 프로젝트 투자 인용 규정 수정 개정(제7조의1 → 제7조의2)

② 인용 규정 오타 수정 (안 제4조제5항)

* 법10조제2항제4호 → 법 제10조제2항제4호

③ 잘못된 규정 인용 수정 (안 제6조제4항)

* 제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→ 제7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

④ 효력 상실 규정 삭제 (안 제6조제6항 삭제)

* 시행령 개정(2009.5.28)으로 해당 규정 효력 상실

⑤ 창투사 투자의무 인정 범위 확대 (안 제7조제5항 신설)

* 창투사가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」에 따른 농식품투자펀드를 통해 창업자, 벤처기업 등의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의무 실적으로 인정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- 제출처 :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
 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
 - 팩스 : 042-481-4418
 - 문의 :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(042-481-4422)
 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<붙임 1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투자의무) ① ~ ④ (생 약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투자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창업투자회사가 「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해당 조합이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에 전체 출자금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투자조합의 투자한 내역이 규칙 제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업투자회사 입장 해야 한다.</p>